

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

- ※ 예비입주자께서 청약하신 내용에 대한 **적격여부 심사**를 위하여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※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형별 예상 잔여세대의 200%에 해당하는 순번의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, 1차 서류접수 대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께서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- 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접수 및 동·호수 추첨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상기 **예비입주자 본인만**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- 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 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 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 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 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- ※ 주차가 불가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비입주자 일정 안내

■ 서류접수 장소 →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견본주택(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)

구 분	기 간	참석 대상
예비 입주자 사전 서류접수	2020.11.26(목) ~ 11.27(금) 2일간 (09:30 ~ 16:30, 오후4시 입장마감)	주택형별 예상 잔여세대의 200% (예시. 특공 84A 예상 잔여세대 10세대 시 특공 예비 순번 1~20번)
예비 입주자 동호수 추첨	2020.12.14(월) 특별공급 입장마감 10:00 / 일반공급 입장마감 13:00 ※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.	예비입주자 서류심사 결과 적격당첨자 (앞 순번에서 포기자가 없을 시 뒷 순번은 추첨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)
예비 입주자 계약	2020.12.15(화) 09:30 ~ 17:30(오후5시 입장마감)	추첨 후 동·호수 확정 예비입주자

- ※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접수는 주택형별 **예상 잔여세대의 200%**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, 해당 예비입주자에게는 사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 (문자 및 070으로 시작하는 견본주택 전화로 안내)
- ※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추첨 및 계약 체결은 서류심사 결과 적격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(서류심사 결과 적격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)
- ※ 상기 예비 입주자 대상자 중 사전 **서류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**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서류접수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결과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이며,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어도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이외의 주택청약 제한사항은 없습니다.
- ※ **추첨 및 계약 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여부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

2. 유의사항

-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의 비율을 500%로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, ‘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’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형별 예상 잔여세대의 200%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하여 당첨자 적격확인을 위한 서류검수를 진행합니다.
-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지 않기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**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시에는 유니트 관람이 불가**하며, 추후 예비당첨자 추첨 후 동·호수 확정되신 분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.
- **1차 서류접수 및 그에 따른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/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에만 2차 서류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**
- 1차 서류접수 대상이 되시는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견본주택에 입장이 가능합니다.
 - ※ **본인 1인만 입장가능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)**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일반공급 가점제)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한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일반공급 가점제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	○		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)
		○	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	직계존속	•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
		○	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,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직계존속	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	
	○	직계비속		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	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시	
무주택 입증서류	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	•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무허가건축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허가 증명서류
			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주택공시기격증명원(개발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
	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‘공고일 현재 세대주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기관추천 특별공급)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한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기관추천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○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	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,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시
○		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본인	•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	
무주택 입증서류	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	•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무허가건축물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허가 증명서류
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
	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‘공고일 현재 세대주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다자녀가구 특별공급)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한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다 자 녀 가 구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 발급]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	배우자	• 배우자의 자녀 및 직계존속 확인 필요시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자녀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• 재혼·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자녀가 있을 때 •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
	○		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•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
	○		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, 출입국사실증명원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시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• 자녀의 출생 관련 확인 필요 시
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
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	
○	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 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의 경우	
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	
무주택 입증서류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	•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	
		무여가건물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여가 증명서류	
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열실·철거예정 증명서	
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 확인서 등	
대 리 인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	
	○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	
	○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	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‘공고일 현재 세대주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신혼부부 특별공급) ①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한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신 혼 부 부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작성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○		채녀	• 채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• 재혼가정의 채녀일 경우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채녀가 있을 때 • 채녀로 인정보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,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시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제출. (2017.01.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.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 서류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) [②페이지 소득증빙서류 참조]
	○		기본증명서	채녀	• 출생관련 확인 필요 시
	○		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(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견본주택 비치, 임신의 경우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의 경우
	○	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해당자	• 견본주택 비치 /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무주택 입주서류	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
			무허가건물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
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
	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대 리 인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‘공고일 현재 세대주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신혼부부 특별공급) ②

4. 전년도(2019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	구분	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통계청 자료)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~ 120% 이하	5,554,984원 ~ 6,665,980원	6,226,343원 ~ 7,471,610원	6,938,355원 ~ 8,326,025원	7,594,084원 ~ 9,112,900원	8,249,813원 ~ 9,899,774원	8,905,542원 ~ 10,686,649원
	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~ 130% 이하	6,665,981원 ~ 7,221,478원	7,471,611원 ~ 8,094,245원	8,326,026원 ~ 9,019,860원	9,112,901원 ~ 9,872,308원	9,899,775원 ~ 10,724,756원	10,686,650원 ~ 11,577,203원

5.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인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② 재직증명서 ※유직기간이 있는 경우: 유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.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신규취업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사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,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세대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,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세무서, ②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사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)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및 부속적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노부모부양 특별공급)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제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노 부 모 부 양 자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내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	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	직계존속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○			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 존속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
○		부부확인서	본인	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○			직계비속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시	
무 주 택 입 주 서 유	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	•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무허가건축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
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열실·철거예정 증명서
	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대 리 인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"전체포함"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생애최초 특별공급) ①

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예비입주자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귀하가 청약한 내용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※ 서류접수는 11/26(목) ~ 27(금) 2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시 예비입주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)

※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
- 견본주택 입장 시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
- 비접촉 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체온이 37.3도 이상인 경우
- 손소독제,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
-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. 사전 서류접수 기간 : 2020.11.26(목) ~ 11.27(금) 09:30~16:00, 오후4시 입장마감 (별도 방문예약 없음)

2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생애최초	○	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무주택 서약서	-	•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필수, 용도에 「아파트 공급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	직계존속	•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	직계비속	•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자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1항 및 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,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복부확인서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시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(배우자 분리세대 포함) 제출. (전체기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,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○	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[②페이지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제출서류 참조]	
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서류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서류) [②페이지 소득증빙서류 참조]	
○		비사업자확인각서	성년자인 세대원	• 견본주택 비치 /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	
무주택 입증서류			건물등기사항증명서	해당주택	•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
			무허가건축물확인서류	해당주택	• 지자체 무허가 증빙서류
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열실·철거예정 증명서
	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대리인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“전체포함” 및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※ 공고일 이후 ‘공고일 현재 세대주’의 주민등록등본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을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(생애최초 특별공급) ②

4. 전년도(2019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공급유형		구분	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통계청 자료)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	구분 없음	130%이하	7,221,478원	8,094,245원	9,019,860원	9,872,308원	10,724,756원	11,577,203원

5.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인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② 재직증명서 ※유직기간이 있는 경우: 유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.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신규취업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,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세대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②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
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, ② 등기소	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세무서, ②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)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	

6.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

해당여부	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생애최초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/세무서
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(납세사실증명서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			

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※ 상기 서류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,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(2020.10.22)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.

